

『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새로운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볼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3조)

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3조의2)

다.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(안 제4조제5호)

- 5. 상표의 개발·변경에 관한 사항

라.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(안 제7조)

마. 변경된 공동상표 심볼 반영 (안 별표1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상표법」 제107조 및 제109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새로운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‘일선정품’의 심볼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,
 -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